

장애인 관점에서의 고등 교육

김 양 수 | 평화복지재단 상임이사

I . 기본권으로서의 특수 교육

오늘날 교육의 영역은 현대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 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교육받을 권리에 대하여 명문화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우리 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교육권은 교육의 실재를 중심으로 형성된 권한 관계를 충괄해서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계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시설자 및 국가 등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의무, 책임과 권한의 총합을 의미한다.

교육은 지난 속성상 개개인에게 사사로이 맡길 수 없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듯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지녀야 할 교육의 영역이 개개인에게 맡겨질 경우 사교육이 비대해지게 마련이다. 특히 교육이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경우에 지나치게 거래 비용이 커질 우려마저 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수 교육의 경우 의료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서 장애 아동의 출현율이 높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 맡겨질 경우 실패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특수 교육의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국

가의 교육권이 보다 중요하게 대두된다. 국가의 교육권이란 모든 국민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수립하고 교육의 질적·양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며, 그에 준해서 교육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그밖에도 국가는 권고권, 교육 시설권, 재정 원조권, 교육 재판권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정리해서 표현하면 국가의 교육권 보장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또는 그 충실한 실현을 위한 후견적 권리라 할 수 있다. 특수 교육의 영역이 단순히 교육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의학, 사회 복지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복합적인 행정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 교육은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평생 교육 등으로 나뉘어 진 일반적인 교육 구분을 보다 철저하고 다양하게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개인적인 차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 있어서 교육에서의 소외는 정상적인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독립적이고 자활적인 존재가 아닌

타인 의존적인 존재로 남게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은 생존권, 행복 추구권 등 인간답게 살아갈 여러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리 심한 장애라도 치료와 재활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음이 물론이다.

게다가 교육받을 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래적인 학습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일반 정상인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경우 그가 가진 장애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수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교육 기회의 평등화로 장애인들이 실제적인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질적인 교육의 평등화로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교육 성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특수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우선 장애인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 기관이 자기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제가 되는 기본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통해 창출되는 자원의 배분 문제로 이는 사적 교육 기관에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 배출되는 장애인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Ⅱ. 특수 교육에 있어서 고등 교육의 중요성과 현황

특수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고등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초·중등 단계의 교육만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의 직업 선택이나 행복 추구에 있어서 원천적인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대 사회는 고학력 사회로 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중등 단계의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에 국한될 뿐이다. 결국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 모두 고등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고등 교육은 보다 절실한 삶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특수 교육은 중등 교육 단계에서 실업계 위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각각의 장애 종별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한정시켜 놓고 중등 교육 단계에서 이에 집중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수 학교에서는 여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입시에 대해 비중을 두지 못하고, 만약 학생이 진학을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듯 고등 교육의 관문을 통과하기에 심각한 제약을 안고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특례 입학 제도를 통해 문호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물론 역차별에 대한 논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시정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역차별은 장애인들의 고등 교육 단계에 대한 접근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 교육 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성 마비를

포함한 지체 장애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 혜택으로 대학 입학이 주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로 인해 1995년 8개 대학 118명이 입학했지만, 2001년에는 70여 개 대학 11,700명 정도로 정원이 확충될 것으로 보여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 장애인만 국한해 봐도 특례 입학 제도 전에는 매년 전국적으로 5명 정도 대학에 진학했지만, 이 제도가 생긴 1995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 올해 2000년도의 경우 50여 명이 대학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1997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 정원은 1,119명이었지만 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학생은 530명(합격자 525명)으로 대학의 문호 개방에 못 미쳤으며, 실제 입학한 학생은 28개 대학에 234명이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학 당국에서 장애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나 여유 없이 장애 학생의 특례 입학을 서둘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장애 종별로 구분해 보면 1995학년도부터 1997학년도까지의 적격 판정 결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체 부자유로서 모두 767명이었고, 그 다음이 청각 장애로서 279명, 그 다음이 시각 장애로서 222명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선 이러한 장애 형태에 필요한 시설이나 수업 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학습 장애나 자폐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에 대해서도 특례 입학의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

III. 장애인 고등 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에 있어서 고등 교육은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양적인 성장에 걸맞은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있어서의 고등 교육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들인가?

장애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중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는 것은 시설이나 설비의 문제이다. 이는 접근권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로 지나치게 높은 보도의 턱, 휠체어의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확보,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이 대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시설과 설비의 문제는 장애 학생들의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로 시각 장애의 경우에 각 호실을 점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안내판이 부착되어야 하고,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보도 블록과 조명 시설도 구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에만 집중 투자하게 됨에 따라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설비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다음으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사실 대학 교육이 전문적인 학문의 분야를 다루고 있는 만큼 학습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 학생들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는 것은 그들의 학습권 충족을 위한 배려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 종별에 따라 시험 시간의 연장, 대필의 허용, 수화 서비스의 활용, 점자 문제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나 시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측면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이 고도의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도 고도의 정보화 소양은 학습을 위한 수단과 목적의 차원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간 관계와 의사 소통의 측면에서 비롯된다. 대부분 특수 학교에서 분리된 채 교육받게 되는 장애 학생이나 반대로 장애 학생이 배제된 채로 비장애인들만의 교육을 받는 비장애인들은 서로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 주고 배풀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빠지기 쉽고 동료 의식을 갖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서로의 의사 소통은 점차 소원해지고 그러면서 대학 내에서도 장애인들은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끼리 다시 모이게 되는 고립과 분리를 겪는 것이다. 대학 내에 다양한 동아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장애 학생들이 다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장애인 동아리를 결성하여 그들끼리 모이고, 학과의 선택도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수 교육과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비장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혜의 감정으로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 당국에서는 비장애인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불하도록 해서 서로 함께 살아가

는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 교육과 취업의 연계이다. 장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취업의 벽을 뛰어넘는 것은 이에 못지 않게 힘든 문제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문 취업 상담원이 필요하고 취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담과 지도로 시정하는 추수 지도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직업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김양수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빛멘학교 교사를 역임했으며, 1997년엔 올해의 자랑스런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상임이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강북지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